
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97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5.

발 의 자 : 김주영 · 박 정 · 최혁진
이학영 · 진성준 · 임호선
김태선 · 염태영 · 박상혁
이훈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,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,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.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관리 강화를 하고자 함.

또한 직업소개사업,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사업자협회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6조제4항·제5항 및 제45조의2제4항 신설).
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8조,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가 제35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.

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4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가 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등록·허가 등의 취소 등) ① ~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36조(등록·허가 등의 취소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8조,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가 제35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</u>

제45조의2(사업자협회의 등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설립	제45조의2(사업자협회의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가 사업 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	설립
---	----	--	----